

# 「서영대학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8(2020.12.09.)호로 비축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서영대학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 사업면적   | 비축사업계획 고시일  |
|-------------------|----------|-----------------|--------|-------------|
| 서영대학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일원 | 1,604㎡ | 2020.12.09. |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구분 | 소재지          | 지번             |
|----|--------------|----------------|
| 토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908-2(총 1개 필지) |

※ 토지조서 세부 내용은 개인별 통지문 또는 열람기간 중에 아래 열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06.8. ~ 2026.06.24. (09:00 ~ 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062)360-3305
- 광주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062)410-6730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4. 보상시기 : 2026년 7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보상 절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보상

###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으며,

나.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 추천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유자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팀 ☎062)360-3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0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